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 대 전 지 방 법 원

## 제 2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5구합1006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6. 2. 4.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7. 10. 한 재산세 9,932,740원 및 지방교육세 1,273,4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9,418,050원 및 지방교육세 1,20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9. 5. 한 재산세 30,070,460원 및 지방교육세 3,537,70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28,512,240원 및 지방교육세 3,354,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당시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로 별지 1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4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정한 지방세 감경대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해당 비율만큼 지방세를 감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redacted]공사(이하 [redacted]공사'라고 한다)는 1985. 1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데, 1992. 5. 23. 기준으로 [redacted]공사의 주주는 [redacted]공사(48.34%), [redacted]공단(26.04%), [redacted]시(25.62%)이었다.

2) 원고는 1991. 12. 14.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2. 5. 23. 설립되었고, 그 부칙(법률 제4425호) 제7, 8조에 따라 [redacted]공사의 모든 재산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redacted]공사는 같은 날 해산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0. 1. 29.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무렵인 2014. 3. 11. 당시 원고의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34.55%), [redacted]공사(19.55%), [redacted]공단(10.53%), [redacted]시(10.37%) 등이다.

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구 [redacted]시 [redacted]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4. [redacted]시 [redacted]구 조례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을 감경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출자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을 오로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이윤의 창출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676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2. 5. 23. 설립되어 한국난방공사의 모든 재산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데, 당시 [redacted]공사의 주주는 [redacted]공사(48.34%), [redacted]공단(26.04%), [redacted]시(25.62%)이었던 점, ②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그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에 의하면 원고에 관하여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감면조항이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것)의 개정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갑 제11호증)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그 설립 준거법이 상법이 아닌 인천대교 주식회사, 벡스코 주식회사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과 같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10.37%)을 곱한 금액을 감경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4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이 1차분 9,418,050원 및 1,207,440원, 2차분 28,512,240원 및 3,354,38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박우근

판사 한웅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별지 1

| 순번 | 과고 | 처분일자 | 부과금액 | | 정당한 세액 | | 납세고지서(서증번호) |
|---|---|---|---|---|---|---|---|
| | |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
| 1 | [redacted] | 2014.7.10 | 9,932,740 | 1,273,420 | 9,418,050 | 1,207,440 | 갑제5호증의 1 |
| 2 | [redacted]시장 | 2014.9.5 | 30,070,460 | 3,537,700 | 28,512,240 | 3,354,380 | 갑제5호증의 2 |
| 합 계 | | | 40,003,200 | 4,811,120 | 37,930,290 | 4,561,820 | |

※ 정당한 세액 계산식 : 부과금액 - 경감액(= 부과금액 × 0.5 × 10.37%), 단 정당한 세액란의 기재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별지 2

##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redacted]공사 및 [redacted]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redacted]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redacted]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0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제33조 (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44조 (「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redacted]공사(이하 "(주)[redacted]"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한난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주)한난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주)한난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주)[redacted]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끝.